③ 건축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는 면허세 과세대상임 (세정13407-102, '99. 11. 4)
④ 건축주 명의변경은 건축법에 의한 신고사항에 해당되므로 수시분 면허세 과세대상임 (세정13407-643, '96. 6. 21)
⑤ 공인회계사의 영업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부과하나, 공인회계사 등록만 하고 별도로 개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의 영업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면허세의 부과대상이 아님 (세정13407-570, '99. 5. 12)
⑥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7조(별지 제28호 서식)의 규정에 의하면 2인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명의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각 구성원은 신고서에 연명으로 기명·날인하도록 되어 있고, 이 경우 각 구성원은 그 영업에 관한 권리·의무에 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고, 이를 신고서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연명신고자 개개인별로 면허세를 부과함 (세정13407-가1114, '98. 10. 28)
⑦ 면허세는 행정처분과 행정행위 등의 각종 면허를 받은 자에게 그 면허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고, 동법 제165조 규정에 의하여 면허세는 당해 면허에 관한 지령서를 교부받을 때 납부하는 것이지만, 은행업·신용카드업·신탁업·보험업·양곡가공업·창고업·무역업·자동차운송사업·부동산중개업은 동법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으로 부터 개별법에 의한 면허를 별도로 받지 아니하여 당해 면허에 관한 지령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농업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사업이므로 면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(세정13407-347, '97. 7. 21)
⑧ 복합민원의 경우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처리주무부서에서 각종 인허가 사항을 일괄 처리한 것일 뿐, 형질변경허가·건축허가·농지전용허가는 별개의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하므로 각각 면허세가 과세됨 (세정13407-791, '99. 7. 2)
⑨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에서 토양오염유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토양오염방지 조치에 대한 계획을 시·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,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시·도지사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음. 이 경우 신고절차 의제제도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신고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면허세가 부과됨 (세정13430-965, '99. 7. 31)
⑩ 건축법 제1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고자 신고하는 경우에는 면허세(수시분) 부과대상임 (세정13407-102, '99. 11. 4)
⑪ "특정열사용기자재의 검사"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24조 제1항의 [별표] 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구분 열거되어 있으므로 동 면허를 받는 자가 면허세 납세의무자가 되며, ○○공단이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·도지사로부터 위탁을 받아 특정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증을 교부하고 있다면 ○